

---

- 2018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삼척시**  
[기획감사실]

# 2018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24건	주의 4 시정 20		4,584,841		
1	○○○	2017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463,000		
2	○○○	2016~ 2017	산지전용을 거치지 않은 토지 농지원부 등재 부적정	시정				
3	○○○	2017~ 2018	종합복지회관 관리업무 소홀	시정				
4	○○○	2017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86,400		
5	○○○	2016~ 2018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자 지정업무 소홀	시정				
6	○○○	2016~ 2017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추징	230,000		
7	○○○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40,000		
8	○○○	2017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감액	435,000		
9	○○○	2016~ 2017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주의				
10	○○○	2017~ 2018	종합복지회관 관리업무 소홀	시정				
11	○○○	2016	주민세(재산분)과세 누락	시정	추징	107,000		
12	○○○	2016~ 2018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3	○○○	2016~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485,000		
14	○○○	2016~ 2018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추징	34,100		
15	○○○	2017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추징	92,604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16	○○○	2017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감액	768,000		
17	○○○	2017	운반기계의 유류대 산정 부적정	시정	감액	270,000		
18	○○○	2017~ 2018	종합복지회관 관리업무 소홀	시정				
19	○○○	2017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추징	120,500		
20	○○○	2017~ 2018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주의				
21	○○○	2016~ 2017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106,200		
22	○○○	2016~ 2017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1,165,000		
23	○○○	2016~ 2017	피복비 집행 부적정	주의				
24	○○○	2016~ 2017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추징	182,037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463,000원

【제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계	2건			△463		
***(*반) 농로정비공사	'17. 7.19	'17. 7.24. ~'17. 9. 5.	22,910	△373	(주)**** ***	
***(***) 농로확장 및 급커브공사	'17.10.17	'17.10.19. ~'17.11.20.	16,350	△90	(합)**** ***	

#### ○ 이윤 적용 현황

사업명	설계 이윤(%)	착공 이윤(%)	설계변경 이윤(%)	비고
***(***) 농로확장및급커브공사	14.916	14.935	14.915	

##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계약 상대자는 예정 가격 작성기준 제21조(이윤)의 규정에 정한 이윤율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7. 7. 19일 \*\*\*\*(주) \*\*\*과 계약체결 시공한 \*\*\*(\*반) 농로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포장부 거푸집을 거푸집(합판6회)로 계획하였으나 유로폼으로 시공하였으며, 일부 마을안길과 접한 미설치 부분에 대하여 373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산출하는 등 공사 설계 변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7.10.17.일 (합)\*\*\*\* \*\*\*과 계약체결 시공한 \*\*\*(\*\*\*) 농로확장 및 급커브개선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포장 거푸집을 거푸집(합판6회)로 계획하였으나 유로폼으로 설치한 부분에 따른 90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고, 계약 상대자가 제출(착공)한 이윤율이 당초 설계 내역서상 이윤 보다 높게 작성 제출함에 따른 착공 내역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설계 변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과다 계상된 463천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공사가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산지전용을 거치지 않은 토지 농지원부등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농지원부 등재 현황

(단위: 필지/m<sup>2</sup>)

지목	계		진 흥		진흥밖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6,197	16,972,353	537	871,618	5,660	16,100,736	
전	5,627	15,424,754	314	518,953	5,313	14,905,801	
답	428	513,032	219	350,455	209	162,578	
과수	9	116,714	-	-	9	116,714	
임야	94	881,418	1	610	93	880,808	
기타	39	36,435	3	1,600	36	34,835	

## 2. 내 용

○ 관련근거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 동법 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 동법 시행규칙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98(2016.1.22), 강원도 농정과-934(2016.1.22)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로써,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에 의한 전·답·과수원·그밖에 법적지목(地目을)을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를 등재하는 등 위 관련 근거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 시·구·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음.

① 사실상 농지와 관련하여 종전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한 경우 농지에 해당 하였으나, 임야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2016.1.21시행)을 통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하였음.

② 그런데, ○○○에서는 2016.1.21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목이 임야인 토지 22필지/533,930㎡를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음. 위 토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 등재 취소 등 필요조치가 요구되며 농지원부 최적관리가 필요함.

### **【처 분 요 구】**

○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아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22건에 대하여 농지원부 등재 취소 등 필요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종합복지회관 관리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위 치 : ○○○ ★★★
- 건축일자 : 1987. 10. 05
- 시설규모
  - ▶ 대지면적 : 1,574m<sup>2</sup>
  - ▶ 건축면적 : 234m<sup>2</sup>
  - ▶ 연 면적 : 674.8m<sup>2</sup>

### 2. 내 용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 시설관리 제9조(관리계획)에 따르면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 시설관리를 하여야 함.

그런데, ○○○에서는 2017년, 2018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수

립하지 않는 등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 분 요 구】**

- 2018년 종합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관련 조례에 따라 연도개시 1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86,4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국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제**회 ***** 워크숍	***	2017.3.9. ~3.10.	부여	169,600	116,800	52,800	1박2일
*****사업 ***** 기준개선 관련 담당자 교육	***	2017.10.20.	서울	91,400	74,800	16,600	1일
*** ** ** 관리시스템 전달교육	***	2017.11.27. ~11.28.	세종	195,200	178,200	17,000	1박2일

###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숙박비는 지역에 따라 1박당 5~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제\*\*회 \*\*\*\*\* \*\* 참석' 등 총 3건에 대한 출장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식사와 숙박을 제공함으로 출장여비 지급시 제외해야 함에도 포함하여 집행하였고, 교통비를 정당액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86,4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자 지정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의사무능력(미약)자 현황

구분	계(명)	정신·지적 장애(1~3급)	6개월이상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18세미만 아동
현황	8	8	0	0

○ 급여관리자 지정 제외대상 현황

구분	계(명)	정신·지적 장애(1~3급)	6개월이상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18세미만 아동
현황	7	7	0	0

○ 급여관리자 지정 대상 현황

구분	계	정신·지적 장애(1~3급)	6개월이상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18세미만 아동
현황	1	1	0	0

## 2. 내 용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261~p266에 의하면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급여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임에도 본인이 타인의 급여 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나, (사적자치의 원칙) 타인에 의한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지적·자폐성장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스스로 금전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금전관리 가능시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서식39호)를 수리 및 보관하여야 함.

그러나, ○○○에서는 의사무능력(미약)자 1명 ◎◎◎ ◇◇◇◇ \*에 거주하는 ○○○에 대하여 급여관리자 지정을 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자 지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 분 요 구】

- 급여관리자 지정을 하지 않은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30,000원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원)

구분	연도별	납세자	과세물건	건수	과세면적	과세표준	금 액	비고
계		2	2	4			230,000	
주민세 (재산분)	2017	**** (****)	*** **리 ***_*	1	175m <sup>2</sup>	250	43,750	
	2016			1	175m <sup>2</sup>	250	43,750	
	2015			1	175m <sup>2</sup>	250	43,750	
	2017	*** (****)	*** **리 **_*	1	387m <sup>2</sup>	250	98,750	

※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별도 산출

## 2. 내 용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

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사업소(2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4건 230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세(재산분) 230,000원을 징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40,000원

【제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3건					미소화 40 초과소화 75
2017.01.10	***** 임차비	*****	1,796	-	40	-40
2017.03.17	** ***** ** 써징 및 저수조 청소	** ****공사	2,500	60	-	60
2017.11.29	***마을회관 디자인형 울타리	**	1,485	35	20	15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

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임차비’ 등 총 3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40천원을 미소화하고, 75천원을 초과소화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40,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435,000원

【제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계				△435		
*** **외4개소 배수로및농로포장공사	'17.11. 9	'17.11.10. ~'17.12.11.	21,455	△435	(주)**** ***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서는 2017.11. 9일 (주)\*\*\*\* 와 계약체결 시공한 \*\*\*\*의 4개소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포장부 거푸집을 거푸집 (합판6회)로 계획하였으나 현지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설치 부분에 대하여 435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산출하는 등 공사 설계 변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설계와 다르게 미시공하여 과다 계상된 435천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공사가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 39건 190,800원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2. 내 용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증지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소재지가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05.03부터 2017.12.06.까지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39건을 금고에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증기 수입금은 기한 내 납입하여 주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번	수수료징수일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 고
계	39건	190,800				
1	2016.05.03	12,900	2016.05.09	*****	1	
2	2016.05.23	3,400	2016.05.25	"	1	
3	2016.06.22	6,300	2016.06.28	"	3	
4	2016.06.24	2,700	2016.06.28	"	1	
5	2016.07.05	14,000	2016.07.07	"	1	
6	2016.07.14	3,000	2016.07.18	"	1	
7	2016.08.31	1,000	2016.09.05	"	2	
8	2016.09.01	1,200	2016.09.05	"	1	
9	2016.09.07	1,200	2016.09.09	"	1	
10	2016.10.19	6,300	2016.10.24	"	2	
11	2016.10.20	8,800	2016.10.24	"	1	
12	2016.10.24	13,000	2016.10.27	"	2	
13	2016.10.25	7,100	2016.10.27	"	1	
14	2016.10.28	1,400	2016.11.01	"	1	
15	2016.11.01	3,000	2016.11.07	"	3	
16	2016.11.02	3,000	2016.11.07	"	2	
17	2016.11.21	3,000	2016.11.23	"	1	
18	2016.11.29	1,800	2016.12.01	"	1	
19	2016.12.01	6,000	2016.12.05	"	1	
20	2016.12.08	400	2016.12.12	"	1	
21	2016.12.21	3,200	2016.12.23	"	1	
22	2016.12.26	4,000	2016.12.28	"	1	
23	2017.01.02	500	2017.01.04	"	1	
24	2017.01.06	2,200	2017.01.11	"	2	
25	2017.01.09	7,200	2017.01.11	"	1	
26	2017.04.28	1,500	2017.05.02	"	1	
27	2017.06.21	4,000	2016.06.26	"	2	
28	2017.06.22	3,400	2016.06.26	"	1	
29	2016.06.28	2,000	2017.07.03	"	2	
30	2017.06.29	14,900	2017.07.03	"	1	
31	2017.08.24	15,400	2017.08.28	"	1	
32	2017.09.15	1,000	2017.09.19	"	1	
33	2017.10.12	7,600	2017.10.17	"	2	
34	2017.10.13	9,700	2017.10.17	"	1	
35	2017.11.01	6,400	2017.11.03	"	1	
36	2017.11.09	4,000	2017.11.13	"	1	
37	2017.11.27	2,200	2017.11.29	"	1	
38	2017.12.01	500	2017.12.05	"	1	
39	2017.12.06	1,600	2017.12.08	"	1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종합복지회관 관리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위 치 : 삼척시 ○○○ ◇◇◇◇ \*\*\*\*-\*

### 2. 내 용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 시설관리 제9조 (관리계획)에 따르면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 시설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2017년, 2018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2018년 종합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관련 조례에 따라 연도개시 1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07,000원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원)

구분	연도별	납세자	과세물건	건수	과세면적	과세표준	금 액	비고
계		1	1	1			107,000	
주민세(재산분)	2016	*** (****)	*** **리 ***_*	1	428m <sup>2</sup>	250	107,000	

※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별도 산출

### 2. 내 용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

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한 사업소(1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1건 107,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세(재산분) 107,000원을 징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가. 업무추진비 기준액 초과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2건		1,059,500
2016.12.2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539,500
2018.01.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520,000

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2건		1,059,500
2016.12.2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539,500
2018.01.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 회식비	520,000

## 2. 내 용

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

나. 또한,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 회식비’ 등 2건 1,059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1인당 집행금액이 3만원으로 하향되었음에도 1인당 3만5천원~4만원으로 계상하여 품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접대성경비 수혜자인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8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 고
2016 ~ 2017	12	2	10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

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등 총 12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485천원을 미소화하고, 355천원을 초과소화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485,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12건					미소화 485 초과소화 355
2016.06.29	*** **지원창고 도장공사	*****	2,090	55	50	-5
2016.09.19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측량용역	****설계	2,921	75	70	-5
2016.11.03	*** **리 소교량 설치공사	****	12,383	310	305	-5
2016.11.07	**(**) 보일러 정비수선	****	882	20	-	-20
2016.12.27	복사용지등 사무용품 구입	****	3,135	50	45	-5
2017.02.16	마을방송시설 설치	****	7,100	175	105	-70
2017.03.16	*** **리 *반 배수로 정비공사	****	18,638	-	465	465
2017.03.30	**** 게시판 제작	*****	9,283	230	135	-95
2017.05.19	가드레일 구입 및 설치	****	14,690	200	220	20
2017.05.24	앰프시설 구입 및 설치	***	9,120	225	135	-90
2017.12.13	** 소규모 정비공사(블라인드 설치)	***	3,300	50	45	-5
2017.12.28	2017년 11월~12월 관용차량 유류비 지출	****주유소	1,650	55	-	-55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34,100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기준일	카드번호	적립 포인트	비 고
계		34,100	
2018. 3. 21.	4140-****-****-****	34,100	BC TOP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6. 5월부터 2018. 3. 21.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총 34,100원(BC TOP 포인트)에 대하여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립된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34,100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92,604원

【제 목】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계약명	도급사	계약금액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비 고
2017.10.19.	*** ***(야영장) 수도시설 관정개발공사	*****공사	18,295,000	92,604	정산서류 부적정

###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야영장) 수도시설 관정개발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보전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하나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사진대장만 제출하였음에도 대가를 지출하는 등 준공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미정산된 환경관리비 92,604원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768,000원

【제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계-3건				△768		
***(**) 농로개설공사	'17. 3.15.	'17. 3.17. ~'17. 5. 5.	25,015	△212	(주)**** ***	
*** 소하천정비공사	'17.10.25.	'17.10.26. ~'17.12. 5.	23,213	△92	****(주) ***	
**** 농로포장공사	'17. 9.25.	'17.11.11. ~'17.11.15.	19,987	△464	****(주) ***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서는 2017. 3. 15일 (주)\*\*\*\* 와 계약체결 시공한 \*\*\*(\*\*) 농로개설공사의 2개소 소하천 및 농로포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지 시공하지 않은 거푸집을 설계 변경하지 아니하고 준공하여 768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산출되는 등 설계 변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설계와 다르게 미시공하여 과다 계상된 768천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공사가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70,000원

【제 목】 운반기계의 유류대 산정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계-1건				△270		
*** *반 배수로설치공사	'17. 3.10.	'17. 3.14. ~'17. 4.24.	14,710	△270	****(주) ***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7. 3. 10일 \*\*\*\*(주) \*\*\*와 계약체결 시공한 \*\*\* \* 반 배수로설치공사를 추진함에 현지 「건설표준품셈」 기계화 시공에 의하면 트럭 또는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 할 경우 적재 또는 적하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하여야 했었는데도 적재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유류대를 계상함으로써 270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설계되게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설계 상 과다 계상된 유류대 270천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공사가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종합복지회관 관리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위치 : 삼척시 ◎◎◎ ◇◇◇ \*\*
- 건축일자 : 1990. 04. 28.
- 시설규모
  - ▶ 건축면적 : 171.78m<sup>2</sup>
  - ▶ 연 면적 : 483.33m<sup>2</sup>

### 2. 내 용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 시설관리 제9조(관리계획)에 따르면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 시설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2017년, 2018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2018년 종합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관련 조례에 따라 연도개시 1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20,500원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원)

연도별	납세자	과세물건	과세면적	과세표준	금 액	비고
계	1명				120,500	
2017	****(주) (110111-0190340)	*** ** *-*번지	482m <sup>2</sup>	250	120,500	

※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별도 산출

### 2. 내 용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

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1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1건 120,5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세(재산분) 120,500원을 징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 31건 229,000원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2. 내 용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증지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소재지가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02.08부터 2018.02.28.까지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31건을 금고에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증기 수입금은 기한 내 납입하여 주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번	수수료징수일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 고
계	31건	229,000				
1	2017.02.08	9,000	2017.02.10	*****	1	
2	2017.04.10	8,800	2017.04.12	"	1	
3	2017.05.26	1,000	2017.05.30	"	1	
4	2017.05.31	6,800	2017.06.05	"	2	
5	2017.06.02	800	2017.06.07	"	1	
6	2017.06.07	2,400	2017.06.09	"	1	
7	2017.06.21	8,100	2017.06.26	"	2	
8	2017.06.22	2,000	2017.06.26	"	1	
9	2017.06.30	1,000	2017.07.05	"	2	
10	2017.07.03	7,000	2017.07.05	"	1	
11	2017.07.07	3,000	2017.07.11	"	1	
12	2017.07.27	11,000	2017.08.01	"	2	
13	2017.07.28	12,600	2018.08.01	"	1	
14	2017.08.03	39,500	2017.08.07	"	1	
15	2017.08.07	3,200	2017.08.09	"	1	
16	2017.08.16	3,800	2017.08.18	"	1	
17	2017.08.18	1,600	2017.08.22	"	1	
18	2017.08.29	16,600	2017.08.31	"	1	
19	2017.09.08	4,600	2017.09.12	"	1	
20	2017.09.14	7,400	2017.09.18	"	1	
21	2017.09.18	2,400	2017.09.21	"	2	
22	2017.09.25	2,600	2017.09.27	"	1	
23	2017.09.26	2,600	2017.09.28	"	1	
24	2017.10.19	3,600	2017.10.23	"	1	
25	2017.12.11	10,500	2017.12.13	"	1	
26	2018.01.30	6,200	2018.02.01	"	1	
27	2018.02.01	15,600	2018.02.05	"	1	
28	2018.02.22	10,100	2018.02.26	"	1	
29	2018.02.26	9,800	2018.03.05	"	3	
30	2018.02.27	14,400	2018.03.05	"	2	
31	2018.02.28	1,000	2018.03.05	"	1	

【일련번호 : 2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106,200원

【제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국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계	3건					106,200	
제*회 ***** 워크숍 참석	***	2016.10.27. ~10.28.	예산	206,800	122,800	84,000	1박2일
제**회 * ** 심포지엄 및 전시회 참석	***	2017.2.22. ~2.25.	제주	518,000	498,000	20,000	3박4일
제**회 ***** 워크숍 참석	***	2017.3.9. ~3.10.	부여	119,000	116,800	2,200	1박2일

###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숙박비는 지역에 따라 1박당 5~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제\*회 \*\*\*\*\* 워크숍 참석' 등 총 3건에 대한 출장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식사와 숙박을 제공함으로 출장여비 지급 시 제외해야 함에도 포함하여 집행하였고, 교통비와 숙박비를 정당액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106,2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16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 고
2016 ~ 2017	21	9	12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

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 \*\* 환경정비 추진 꽃묘목 구입’ 등 총 21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165천원을 미소화하고, 85천원을 초과소화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165,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b>계</b>	<b>21건</b>					미소화 1,165 초과소화 85
2016.05.0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 *** 환경정비 추진 꽃묘목 구입	***** (주)	1,000	25	15	-10
2016.05.10	2016년 4월 관용차량 유류비 지출	***** (주) **주유소	1,114	30	15	-15
2016.05.11	*** 소교량설치 및 농로 정비공사	(주)****	16,257	410	405	-5
2016.05.23	*** 진입로 종단선형 개선공사	(주)**	17,208	-	430	430
2016.05.30	유선방송 선로 제거사업	*****	15,456	380	385	5
2016.06.02	** *** 시설 보수공사	****	16,200	410	405	-5
2016.06.09	***** 시설 보수공사	****	11,825	300	295	-5
2016.06.29	***** ** 정비공사	*****	10,430	270	260	-10
2016.11.15	이불 및 방석 구입	***	1,250	20	15	-5
2016.11.15	물품(TV, 옷장, 냉장고)구입	****	2,436	25	35	10
2016.12.06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 구입	****	1,309	25	15	-10
2017.03.31	*** 배수로 설치공사 관급자재(스틸그레이팅)	*****	8,800	125	130	5
2017.04.24	*** 농로법면 정비공사	(주)**	13,567	340	335	-5
2017.04.24	*** ** 배수로 정비공사	****	16,731	365	415	50
2017.04.25	*** 배수로 설치공사	****	16,125	405	400	-5
2017.07.10	2017년 6월 관용차량 유류구입	***** (주) **사업소	1,010	-	15	15
2017.08.02	***** 안내표지석 수선	****	1,600	-	40	40
2017.09.29	**** 마을회관 옥상방수공사	*****	11,775	260	290	30
2017.11.17	**** 농로포장공사	****	19,987	500	495	-5
2017.11.17	*** 경로당 도배 교체공사	*****	1,045	30	25	-5
2017.12.14	*** 소하천정비공사	**** (주)	23,213	-	580	580

【일련번호 : 23】 신분상 조치 \*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피복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시설부대비 피복비 집행 부적정 현황

연번	지급일	집행내용	품목	수량	단가	지출금액(원)	지출과목
계	3건					3,874,000	
1	2016.12.02	동절기 도로 및 사업장 관리자 ** 및 *** 구입	**	2	299,000	598,000	시설부대비
			**	1	199,000	199,000	
			***	5	269,000	1,345,000	
			**	1	52,000	52,000	
2	2016.12.06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 구입	***	7	187,000	1,309,000	시설부대비
3	2017.02.06	제설 작업관리자 *** 구입	***	1	279,000	279,000	시설부대비
			**	2	46,000	92,000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

류”에 따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로 대분류하고, 시설부대비(401-03)는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 집행은 사무관리비(201-01)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 구입' 등 총 3건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시설부대비에서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업무상 필요함을 이유로 고가의 등산의류 매장에서 피복비를 지출하였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아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 편성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24】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6 ~ 201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82,037원

【제목】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계약명	도급사	계약금액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비고
계	3건			182,037	
2016.06.24.	***** 개비온 설치공사	(주)**	10,550,000	57,335	정산서류 부적정
2017.04.24.	*** *반 배수로 정비공사	(자)****	16,731,000	85,158	정산서류 누락
2017.10.19.	***청사주변 정비공사(토목)	(합)****	8,186,000	39,544	정산서류 부적정

###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

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개비온 설치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보전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사진대장만 제출하였음에도 대가를 지출하는 등 준공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미정산된 환경관리비 182,037원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